

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3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이균형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“지방자치법 제3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”로 함.(안 제1조)
- 나. “상수도사업소”를 “환경사업소”로 “환경사업소”를 “시설사업소”로 하고, “시설사업소”를 “아름다운문화센터”로 변경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순으로 정비 함.(안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)
- 다. “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”을 “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함.(안 제5조제15호)
- 라. “법 제36조제5항”을 “법 제41조제5항”으로, “지방자치법 제20조”를 “법 제27조”로 함.(안 제9조제4항 및 제7항)
- 마. “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”을 “법 제41조제4항”으로 함.(안 제9조의2제3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15호 중 “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”을 “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한다.

3. 환경사업소
4. 시설사업소
5. 아름다운문화센터

제9조제4항 “법 제36조제5항”을 “법 제41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20조”를 “법 제27조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” “법 제4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4호 중 “동두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”를 “「동두천시 폐기물관리예관한 조례」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6호 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하며, 제9조제6항 중 “형사소송법”을 “「형사소송법」”으로, 제16조 중 “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, 제17조 중

“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”를 “「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로 하며, “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”을 “「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3. 상수도사업소 4. 환경사업소 5. 시설사업소 6. ~ 14. (생략) 15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 16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-- ----- 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환경사업소 4. 시설사업소 5. 아름다운문화센터 6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권한) ① ③ (생 략)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 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 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<u>법 제36조제5항</u>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의장의 통보등으 로 시장이 부과한다. ⑤ ~ ⑥ (생 략)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절차는 <u>지방자치법 제20조</u> 의 규정에 의한다.	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권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법 제 4 1 조 제 5 항 ----- ----- ⑤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 법 제27조 ----- 제9조의2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41조제4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9조의2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~ ② (생 략) ③ <u>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</u> 의 규정에 의하 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, 진술을 하기 위 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 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.	제9조의2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41조제4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7조(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.

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,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